

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정례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2. 11. 28.(월)

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
일부개정고시안
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
일부개정고시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 : 경상북도교육감

2. 개정 이유

- 학교 통폐합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,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일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

구 분	학 교 명	폐지 일시	비고
폐지	서후초등학교대흥분교장	2022. 3. 1.	서후초
	하양초등학교화성분교장	2022. 3. 1.	하양초
	북삼초등학교오평분교장	2022. 3. 1.	북삼초, 송산초

나.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중학군(구) 조정

-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(초등학교) 통학구역 거주지 내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 학교(초등학교) 졸업 할 경우, 주소지 기준의 중학군(구)과 졸업하는 학교 기준의 중학군(구)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
- 2023학년도 중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(중학교)에서 작은 학교(중학교)로 일방향 자유학구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

4. 검토 의견

-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부분에는
 - 2022. 3. 1. 폐지한 안동 서후초등학교대흥분교장, 경산 하양초등학교화성분교장, 칠곡 북삼초등학교오평분교장을 각각 해당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서 삭제하였으며,
-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
 - 2023학년도 중학교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학교(중학교)에서 작은 학교(중학교)로의 일방향 이동이 가능한 자유학구로,
 - 2022학년도 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학교(초등학교) 통학구역 거주지 내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 학교(초등학교) 졸업 시, 주소지 기준과 졸업하는 학교 기준의 학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.
-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학교 폐지에 따른 변경 내용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일부 중학교군·중학구의 내용을 수정·반영하여 학생·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타 여건 변화로 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은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항으로 사전에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

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붙임1】

관 계 법 령

□ 초 · 중등교육법

제43조(입학자격 등)

-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

제68조(중학교 입학방법)

- ①교육장은 지역별 ·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, 거리 ·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.
-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· 학교군 ·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 ·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